

2026년 상반기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상반기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3.

파 주 시 장

1 사업 개요

- 보급대수: 총 1,392대(승용 1,229대, 화물 150대, 승합 13대)

(단위 : 대)

구 분	합 계	일 반	우선순위 ¹⁾	택 시 ²⁾	택 배 ³⁾	어린이통학용 ⁴⁾
전기승용	1,229	1,049	120	60	-	-
전기화물	150	128	15	-	7	-
전기승합	13	9	-	-	-	4

※ 대상자 선정은 지원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이며, 차종별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보급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여러 대의 차량이 출고·등록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1)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 2) 택시: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 물량으로 신청
- 3) 택배: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 4) 어린이통학용: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차(*승차정원 9명 이상)

- 접수기간: 2026. 1. 27.(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신청

○ 구매가능 대수

· 전기승용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 (승용 일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승용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전기화물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 (공통)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 (화물 소형·경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화물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가능

· 전기승합

- 일반승합: (개인) 1대
- 어린이통학용 승합: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 (승합 중·대형)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 특수관계: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 등 포함)
- ▶ (어린이통학용)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 지원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 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구매지원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파주시에 60일 이상 거주하거나 파주시에 6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개인)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
 -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 지원 가능
 -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공공기관) 파주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이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 승용·승합·화물: 2년('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
 -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추가로 구매 시 최초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3 지원금액

○ 1대당 보조 금액: 아래표 참조

(단위: 만원/대)

차 량 별		최대 보조금액(대당)			
		계	국비	시비	도비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70	580	290	-
	소 형	최대 795	530	265	-
	초 소 형	300	200	100	-
전기화물	대 형	최대 9,000	6,000	3,000	-
	중 형	최대 6,000	4,000	2,000	-
	소 형	최대 1,575	1,050	525	-
	경 형	최대 1,155	770	385	-
	초소형	570	380	190	-
전기승합 (일반)	대 형	최대 9,100	7,000	2,100	-
	중 형	최대 6,500	5,000	1,500	-
	소 형	최대 1,950	1,500	450	-
전기승합 (어린이통학)	대 형	최대 15,985	11,500	3,450	1,035
	중 형	최대 11,822	8,500	768	2,554
	소 형	최대 4,172	3,000	271	901

- (승용차)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소형·경형 화물차)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유의사항
 - 폐차 미이행할 경우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전기승합차 구매 유의사항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자부담**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장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어린이통학용 차량 구매보조금 신청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보조금 추가 지원

구 분		추가 지원
전 승 기 용	공 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중 소 대 형	전기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초 소 형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전 화 기 물	소 형 · 경 형 초 소 형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자
	초 소 형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보유, 매매, 수출말소 해당)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전 환 지 원 금	초 소 형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 환 지 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 ※ 개인사업자 지급 불가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 원 이내, 시비 3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시 체크란에 Y 표시 ※ 별도 추가 신청 불가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 신청 시까지 전환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4 전기차 구매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26. 1. 27.(화) 10:00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제작·수입사)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p>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p> <p>구매자 → 제작·수입사</p>	<p>▶ 전기자동차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제출</p>
<p>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p> <p>제작·수입사 → 파주시</p>	<p>▶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사본(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p> <p>▶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신청</p> <p>▶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함</p> <p>※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시스템에 1개의 파일로 첨부</p>
<p>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p> <p>파주시 → 제작·수입사</p>	<p>▶ 파주시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 등을 검토 후 자격을 부여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안내</p> <p>▶ 자격부여는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함</p> <p>※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불가</p>
<p>④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p> <p>제작·수입사 → 파주시</p>	<p>▶ 제작·수입사는 자동차가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지원가능확인요청'</p> <p>▶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p>
<p>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문자로 승인문자 전송)</p> <p>파주시 → 제작·수입사</p>	<p>▶ 파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p> <p>※ 대상자 선정일, 차량출고기한(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등록 및 보조금 신청 기한(출고 이후 10일 이내) 안내</p> <p>▶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p>
<p>⑥ 차량 출고·등록</p> <p>제작·수입사</p>	<p>▶ 반드시 승인문자 받은 후 진행</p> <p>▶ 대상자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p>
<p>⑦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차량등록 후 10일 이내)</p> <p>제작·수입사 → 파주시</p>	<p>▶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파주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p> <p>※ 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시스템에 1개의 파일로 첨부</p>
<p>⑧ 보조금 지급</p> <p>파주시 → 제작·수입사</p>	<p>▶ 파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전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p> <p>※ 단,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p>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파주시는 구매신청서 접수순으로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함
 - ※ **자격부여**는 대상자의 신청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격부여에서는 차량 출고·등록이 불가함. 반드시 지원가능확인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문자 수령 이후 차량 출고·등록하여야 함
 - 제작·수입사는 자격 부여 이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신청
 - 파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로 통보함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류
 - 필수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2], 차량 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 (개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발급용) 1부
 - ※ 과거 주소변동이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하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인, 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법인등기부등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
- (경유화물차 대체 구매)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폐차)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만18세 ~ 현재까지, 전국 기준) 중 자동차 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미과세증명 서류 [위택스에서 발급] 2009년부터 전국 자료 발급 가능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시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 (택배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활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전환지원금)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증명하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매매)자동차 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폐차)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
- (어린이통학용 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 (승합(대형)) 자부담금확인서, 하자보증보험증권

· 지급신청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제조·수입사), 통장 사본(제조·수입사), 지방세 완납증명서, 청렴이행서약서
- (경유화물차 대체 구매) 자동차 말소 등록증 폐차 이행
- (어린이통학목적 차량 구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전환지원금) (매매)자동차 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폐차)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

6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

·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출고 또는 보조금 지급 전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자격부여 단계에서 차량을 출고·등록한 경우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를 아니한 경우
- 차량 출고 이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아니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전기자동차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여야 하고 출고 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 기재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차량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등) 보유자의 자산검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주시가 보조금 지급내역(지자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특기사항란 기재
- 전기버스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하여야 하고, 20일 이내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미준수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전기버스 전용 충전시설 미확보 및 정상적인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의무사항
 - 차량 매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

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매매하는 경우 전기 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매매 가능(부득이하게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에 대하여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조치)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차량 말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7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파주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민원콜센터 ☎ 031-940-4114) 및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자동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통합콜센터)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도 총괄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경기도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경기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031-120 (경기도콜센터)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개인사업자) 집행 관련 업무 - 법인, 개인사업자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 개인사업자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032-590-9907
파주시 에너지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파주시 통합콜센터 (031-940-4114)로 우선 문의	031-940-8465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금액 및 대상 차량 확인 등	www.ev.or.kr

-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동의서 포함) 1부.
 2. (차량 출고·등록후) 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3. 초소형 전기자동차 승용/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1부.
 4. (보조금 지급신청시) 청렴이행서약서 1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초소형
전기자동차

[] 승용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파주시의

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파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지원대상자(구매자) : (서명 또는 인)
 전기차 제작·판매사(신청인) : (사업자 직인)

파주시장 귀하